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박종한
대한민국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319

발송일 (일/월/년) 2016년 09월 29일 (29.09.2016)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KETI0698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06827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6년 06월 27일 (27.06.2016)

우선일 (일/월/년)
2015년 06월 30일 (30.06.2015)

국제특허분류(IPC)
H01Q 7/00(2006.01)I, H01Q 21/28(2006.01)I, H02J 7/02(2006.01)I

출원인
전자부품연구원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 | | |
|---|--|---|
| <p>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p> | <p>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6년 09월 29일 (29.09.2016)</p> | <p>심사관 장기정 전화번호 +82-42-481-8364</p>  |
|---|--|---|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 | | | |
|----------------|-----|-----|----|
| 신규성 (N) | 청구항 | 1-6 | 있음 |
| | 청구항 | 없음 | 없음 |
| 진보성 (IS) | 청구항 | 없음 | 있음 |
| | 청구항 | 1-6 | 없음 |
|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 청구항 | 1-6 | 있음 |
| | 청구항 | 없음 | 없음 |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5-0055755 A (주식회사 한림포스텍) 2015.05.22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

1.1.1 독립항: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유도 전력 전송부(D1의 청구항 1 참조); 및 하이브리드 무선 전력 전송 장치(D1의 청구항 1 참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인용문헌 D1에는 청구항 제1항의 특징인 자기 공진 소자부 및 안테나간의 이격 배치 구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항 제1항의 발명과 차이가 있지만, 상기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의 자기 공명 전력 전송부(D1의 청구항 1 참조); 및 유도 전력을 전송하는 전송코일과 공명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안테나 구조(D1의 청구항 1 참조)로부터 용이하게 착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1.2 종속항: 제2항 내지 제5항

청구항 제2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안테나와 안테나에 연결된 제2가변 커패시터 블록을 포함하는 자기 공명 전력 전송부(D1의 청구항 1 참조)로부터 단순히 설계변경 가능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해당됩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3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유도 전력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유도 전력 신호를 조절하는 유도 전력 전송부(D1의 청구항 3 참조)로부터 단순히 설계변경 가능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해당됩니다.

청구항 제4항 및 제5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유도 전력을 전송하는 전송코일; 및 공명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안테나(D1의 청구항 1 참조)로부터 단순히 설계변경 가능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 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3 청구항 제6항

1.3.1 독립항: 청구항 제6항

청구항 제6항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안테나에 제1, 제2 전력전송스테이션을 더 포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유도 전력을 전송하는 전송코일; 및 공명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안테나(D1의 청구항 1 참조); 및 제1, 제2 가변 커패시터를 통하여 신호를 조절하는 것(D1의 청구항 1 참조)으로부터 단순히 설계변경 가능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해당되므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6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